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가합50088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우승학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 종결2022. 9. 21.

판결 선고2022.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65,123,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C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할 목적으로, 2006. 12.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출자비율: D 70%, 원고 30%)을 체결하였고, D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같은 날 시공분야는 D이, 설계분야는 E이 분담하기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D, E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위 각 공동수급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7. 4. 1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중앙지점과, D은 피고의 동대문지점과 각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원고 부분 보증계약', D과 피고 사이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D 부분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07. 4. 19.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1. 17.경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가스터빈 등과 관련하여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5.경부터 원고와 D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마. D은 2015. 3.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뒤 2016. 2.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 20.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4317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선행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0. 6.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28.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주 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가. 원고는 3,746,476,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21. 10.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736,999,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21. 10.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6,169,945,384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3,169,945,38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원고와 피고는 2021. 11.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263,543,032원(원고), 1,568,077,889원(피고)을 각 지급함으로써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전액1)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대채무자인 D을 공동면책시켰으므로, D의 부담부분(2,333,201,697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상권을 갖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게 갖는 보증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 2,333,201,697원 중 이미 지급한 1,568,077,88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65,123,808원(= 2,333,201,697원 - 1,568,077,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행사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은 그 이행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D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의 존부는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아니거나, 설령 소송물이라고 보더라도 그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2) 선행사건의 소송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행사건의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채무 전체(6,169,945,384원)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② 피고가 원고 및 D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아래와 같이 보증한 보증인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부분 보증계약 및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액(즉,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손해배상채무 전체)과 동일한 액수(6,169,945,384원)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압가스배관부	5년	2,127,994,645	911,997,705	3,039,992,350
고온가스연소관	5년	218,879,430	93,805,470	312,684,900
지중송전선로	5년	138,827,710	59,497,590	198,325,300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541,120,300	231,908,700	773,029,000
기타설비	3년	4,153,535,610	1,780,086,690	5,933,622,300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선행사건의 소송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선행사건에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참조).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선행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의 누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사건의 법원은 선행 확정판결의 '청구취지'란에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인 6,169,945,384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이 선행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위 판결의 주문 제2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그 부분의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청구에 관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참조).

선행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D 부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동일한 채권을 행사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석재

판사이유섭

판사홍인

1) $3,746,476,964\text{원} + [(3,746,476,964\text{원} \times 0.06 \times 1,708) \div 365 + (3,746,476,964\text{원} \times 0.12 \times 27) \div 365] = 4,831,620,921\text{원}$

2) 선행 확정판결이 인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원고와 D의 분담비율(3:7)대로 나누고, 위 판결에서 적용한 책임제한 비율(60%)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각 피고의 보증한도 범위 내이다.